

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 대부료 면제 동의안

인 천 광 역 시

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 대부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17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4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제안이유

- (재)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(연수구 송도동 2-1 소재)을 무상사용허가 신청함에 따라
- 「(재)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 제1항 제2호,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부료의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 대부료 면제 동의안

- 공유재산 목록

소재지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-1 (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)			개관일	2001. 4. 22		
재산종류	잡종재산			폐관일	2007. 3. 12		
대지면적	33,018.7㎡	연면적	999.9㎡	층수	지상2층	구조	경량철골조

- 대부사항
 - 대부기간 : 법인 해산시까지
 - 대부조건 : 대부료 면제

참고사항

- 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 무상대부 계약 계획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 사항

- 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 -
무상 대부 계약 계획

《 추진배경 》

- (재)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(연수구 송도동 2-1 소재)을 무상 사용허가 신청.
- 「(재)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 제1항 제2호,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함

□ **관련근거**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(계약방법)

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, (이하 생략)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 29조 (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) 제1항 제18호

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

18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

- (재)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공유재산의 대부)

시장은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(대부기간) 제1항 제1호

- ①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다만,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토지와 그 정착물 : 5년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제1항 제2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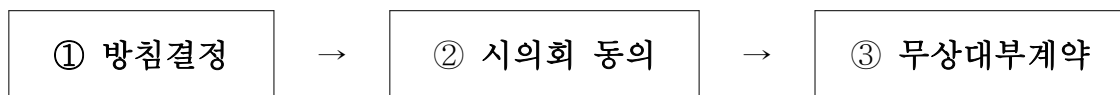
-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**지방의회의 동의를 있을 때**

※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(대부료)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제1항 제3호

- ①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청사무상 대부계약 흐름도



대부개요

- 사용대상 : 경제자유구역청 舊홍보관(건물 및 대지)
- 대부기간 : 법인 해산시까지
- 대부조건 : 대부료 면제

舊홍보관 현황 및 전경

○ 舊홍보관 현황

소재지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-1			개관일	2001. 4. 22		
재산종류	잡종재산			폐관일	2007. 3. 12		
대지면적	33,018.7m ²	연면적	999.9m ²	층수	지상2층	구조	경량철골조

○ 舊홍보관 전경



추진경위

- 2007. 3. 12 홍보관 업무중지(사유 : 시설 낙후 및 신홍보관 운영으로 이용객 점차 감소하는 등 예산액(1억 5천만원) 대비 효과 미흡)
- 2007. 3. 20 행정재산 → 잡종재산(조례규칙심의회)

향후 추진일정

일정	추진내용	추진부서	비고
'07. 3. 30일한	○ 무상 대부계약 방침결정	건축지적과	
'07. 4. 02일한	○ 대부료 면제 허가동의 시의회 제출	"	
'07. 4. 10 ~ 4. 24 (제155회 임시회)	○ 시의회 동의	"	
'07. 4. 27한	○ 무상 대부계약 체결 통보	"	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9조 (계약방법)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, (이하 생략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9조 (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) 제1항 제18호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8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재)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공유재산의 대부) 시장은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(대부기간) 제1항 제1호 ①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토지와 그 정착물 : 5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제1항 제2호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 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제1항 제3호 ①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</p>
관련 법규 정비 대상	
관련 자료	